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72호

**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44호(2022. 8. 18.)로 정비구역 결정·고시된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(일몰)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2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

○ 정비구역 현황

구역명	위치	구역면적(㎡)	추진단계	비고 (최초결정고시)
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용산구 갈월동 92 일대	17,658.8	조합설립인가 (인가일 : 2023. 4. 14.)	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44호 (2022. 8. 18.)

○ 해제(일몰)기한 연장 : 2028. 4. 13. 까지

2.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사유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(☎02-2133-4928)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03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